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계약서

제1조(총칙)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옥외광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사업권역과 광고물 수량은 부록 A-1 가항과 같다.

②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회와 사업자는 상호간 권리·의무·책임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제회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기금”이라 함은 공제회가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원을 말한다.
3. “광고물”이라 함은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표현물을 말한다.
4. “광고시설물”이라 함은 광고탑 등 광고물 게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5. “광고물 등”이라 함은 광고물 및 광고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공제회와 사업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계약서와 사업자의 이행(지급)보증 등 일건 서류로 구성한다.

제4조(계약기간, 사업기간, 계약의 유효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이행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광고시설물 설치 부지 확보(임대 등 포함), 설치승인 신청 등 광고물 등의 설치 및 게첨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으나, 광고물 등의 설치 및 게첨은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다.

② 공제회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해당 권역 내 광고시설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③ 사업자는 부록 A-1 가항에서 정한 옥외광고사업 권역・수량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사업 수행 및 광고물 등의 사용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법률상・사실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변경, 이전, 설치 및 원상복구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부록 A-2에서 정한 기금총액(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 시에 현금으로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납부와 지체상금) ① 사업자는 이 계약서 부록 A-2 기준에 의거 기금을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기금납부는 부록 A-3에 지정된 계좌로 별도의 납입고지 없이 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기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2.5/1,000)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지체일수 ×2.5/1,000×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체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일을 초과하여 지체한 경우 공제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9조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광고시설물 수량 증가나 디지털 시설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금납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기금납부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변경 등) ① 사업자는 공제회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는 허가지연 및 불허가 등 옥외광고사업의 지연, 차질로 인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기간에 당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및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부록 A-1 가항에 따른 광고시설물의 설치 수량이 정부방침 결정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경우, 변동원인이 발생한 날(광고 폐첨 접수완료일)부터 제1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염병(코로나-19등) 등을 사유로 정부가 감면방침을 정했을 것
2. 사업자가 감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
3. 공제회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통해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것
4.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와 옥외광고물법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을 것

제9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① 사업자는 기금납부 및 지체상금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금납입총액에서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110/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회를 채권자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보증사고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연 도	구 분	보증 · 보험기간	보증 · 보험 제출마감일자
2022년도	계약금	현 금	**계약체결일자**
	1차~4차 중도금	계약체결일~ 2022.12.31.	**계약체결일자**(1차~4차 중도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2023년도	5차 ~ 8차 중도금	2023.01.01.~ 2023.12.31.	**4차 중도금 납부 후 7일 이내**(5차~8차 중도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2024년도	9차 ~ 10차 중도금, 잔금	2024.01.01.~ 2024.12.31.	**8차 중도금 납부 후 7일 이내**(9차~10차 중도금 및 잔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② 사업자가 제1항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공제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 중 광고시설물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납부액이 증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증액사유 발생 이후 변경계약 체결 시에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지급)보증금의 처리) ① 제9조 제1항의 기금납입에 대한 이행(지급)보증금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종료 시 체납된 기금과 지체상금에 충당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을 먼저 충당한 후 체납된 기금을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이행(지급)보증금으로 지체상금, 체납된 기금 등을 전부 충당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이 계약에 의한 광고시설물은「옥외광고물 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2호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옥외광고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의 승인 하에 제출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추가 및 변경 설치할 광고시설물에 관하여 공제회에 설치심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제회의 문서 시행을 통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완료 및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광고시설물을 주로 사용하는 당사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광고시설물 설치·관리 시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위치의 선정 및 광고물 등을 설계하여야 하며, 광고시설물의 간격 및 높이제한 특례 등은 부록B에 따른다.

③ 공제회가 안전, 미관, 공익 또는 정부방침 결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광고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기 설치된 광고시설물의 변경, 이전 및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시설물의 추가 및 변경 설치) ①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공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아래 각 호의 광고시설물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날로그(소재:플렉스) 광고시설물 추가 설치: 소권역별 2기
2. 디지털(소재:LED) 광고시설물 추가 혹은 변경 설치: 소권역별 1기

② 광고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공제회는 외부 전문기관 원가계산을 통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기존 시설의 철거, 광고시설물의 설계 및 설치를 담당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는 공제회가 담당하며, 사업자는 광고시설물 설치 완료 후 공제회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준공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③ 광고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각 호의 산출방식(광고시설물 1기 기준)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잔여일수의 기금 납부 기준일은 사업자로부터 준공보고서를 받은 날로 한다.

1.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추가 설치

   제5호의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평균 계약금액 × (사업기간 잔여일수 / 사업기간 총일수) = 추가 계약금액

2. 디지털 광고시설물 추가 설치

   제4호의 디지털 광고시설물 금액 × (사업기간 잔여일수 / 사업기간 총일수) = 추가 계약금액

3. 디지털 광고시설물 변경 설치

   (제4호의 디지털 광고시설물 금액 - 5호의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평균 계약금액) × (사업기간 잔여일수 / 사업기간 총일수) = 추가 계약금액

4. 지역별 디지털 광고시설물 금액

   가. 서울특별시 : 5,436,311,000원

   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 4,246,065,000원

   다.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2,673,239,000원

   라. 기타 : 2,241,066,000원

5.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평균 계약금액 산출방식

가. 소권역 내 디지털 광고시설물이 없는 경우

최초의 계약금액 / 최초의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계약수량

나. 소권역 내 디지털 광고시설물이 있는 경우

(최초의 계약금액 - 제4호의 디지털 광고시설물 금액 × 최초의 계약금액 / 예정가격) / 최초의 아날로그 광고시설물 계약수량

④ 광고시설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디지털 광고시설물을 아날로그 광고시설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광고시설물 추가, 변경 설치시에는 공제회가 민원,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정하되, '공제회 - 사업자 - 해당 지자체 -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간 합의 이후 광고시설물의 추가, 변경 설치가 가능하다.

제15조(광고시설물 이전 및 추가설치시 구간 및 경계 판단기준) ① 광고시설물을 이전 및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소권역별 구간은 부록 A-1 나항과 같다.

② 부록 A-1 나항에 의하여 소권역별 구간 및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별 관할 구역과 도로를 경계로 하며, 동일 기초자치단체별 관할 구역과 도로에 복수 사업자의 광고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도로 상에서 사업자 광고시설물 간 최소거리의 중간 지점을 경계로 한다.

제16조(공제회의 광고시설물 시설 직접 운영) ① 공제회는 사업기간 중에 특별시범 운영 1기 및 전체 사업구간 외의 지역에 광고시설물을 직접 운영하여 광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회가 광고시설물을 운영하여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회 직영 광고시설물과 사업자 광고시설물간 사업구간 경계 설정이 필요할 경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광고시설물의 이전 설치) ① 사업자는 사업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광고시설물을 이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회에 이전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이전・설치, 철거 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광고시설물의 이전 설치 승인은 당해 권역별, 노선별 지정구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노선 이내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하여 권역내로 정할 수 있다

③ 광고시설물 이전 설치 시에는 공제회가 민원,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정하되, '공제회 - 사업자 - 해당 지자체 -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간 합의 이후 광고시설물의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제18조(공공사업 시행) ①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제회가 사업자에게 광고물 등의 철거 및 이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의 이전 설치의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금사업에 지장 및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주체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주체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는 광고시설물의 철거, 이전・설치비용에 한하여 공제회가 부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이전 설치를 하지 못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광고시설물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물의 게첨, 관리 등) ① 사업자가 광고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의 디자인 심의를 거친 후 게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광고물을 게첨・폐첨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 일자와 내용에 대하여 공제회에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목적 광고 표출의무) ① 사업자는 디지털 광고시설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에서 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목적 광고표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절차나 방법은 공제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금지광고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광고시설물에 게첨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공제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광고물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22조(광고시설물 설치 부지 확보 등) ①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사업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광고시설물 설치 부지를 확보한다.

② 사업자는 토지주와 광고시설물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 등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회가 광고시설물 등의 소유·관리를 위하여 공제회 직원(대리인 포함)의 설치장소 출입을 허용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등 부지확보 관련 계약서 사본(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 포함)을 포함하여 이를 이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공제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사업자, 공제회 3자간 합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③ 사업자는 광고시설물 설치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토지 사용권 계약시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5차 사업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 사용권 계약기간이 5차 사업기간 도중에 종료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기간을 사업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3. 공제회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 사용권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토지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사용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계약상 토지 사용권자를 사업자에서 공제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등 토지사용 대가 및 계약 변경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의 토지 사용계약 관련 정보(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포함)에 관한 일체를 2024년 1월 10일까지 공제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① 공제회는 광고물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정밀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광고물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
2. 수시 안전점검・보수 및 소모품 교체(영구시설물 제외) 등 통상적인 안전관리 및 관련비용을 부담

제24조(광고물 등의 관리 및 게첨현황 보고) ① 사업자는 매분기별로 광고물 등의 관리 상태 및 광고시설물별로 매월 광고 게첨현황(광고안, 광고기간, 광고료, 게첨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3·6·9·12월) 다음달 10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공제회가 별도로 제공하며,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024년 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제출한다.

② 사업자는 광고물 등의 설치·관리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태풍, 장마 등 기상이변 포함), 감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요청하는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광고물 등의 관리책임) ① 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역내(관리범위) 모든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며,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관리범위 내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관리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주변 환경, 경작물, 시설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및 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사업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한 담보금액 이상의 보상 및 배상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 자체비용으로 책임진다.

제27조(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제회의 승인 하에 광고시설물에 부속 시설물을 추가설치 또는 개조할 수 있으나 사업기간 종료일 전에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공제회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공제회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가 제9조에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한 내에 공제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 기금납부를 20일 초과하여 지체하였을 경우
4. 사업자가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3자합의서 방식)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 공제회 또는 사업자가 해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어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사업자(사용인 및 대리인 포함)가 옥외광고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7. 제37조에 해당하는 각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해지의 경우 사업자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은 공제회에 귀속되고, 해지 의사표시 도달 일까지의 옥외광고사업 기금은 일할 계산방식으로 정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제3항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귀속은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9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공제회는 제2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에게 6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5조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정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회는 제2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별개로, 광고물 게첨을 위한 옥외광고심의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및 상표권) 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사용계획 포함)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은 취득 또는 동 권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 모든 책임과 해결비용 등을 부담한다.

제31조(권리의무 양도제한) 사업자는 공제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비밀의 유지) ① 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타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이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공제회의 업무 및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제회는 본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 등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와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당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계약의 변경) ① 이 계약 내용의 변경은 이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변경의 사유와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이 계약의 내용을 추가, 수정,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4조(계약조건의 해석) 계약의 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민법, 기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35조(표제어) 이 계약서 각 조문의 표제어는 편의상 정의하여 붙인 것으로 그 단독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거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하여 공제회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공제회와 사업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 기간 중 이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보칙)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2. 옥외광고사업 관리 규정
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4.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관리지침
5.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첨부: 1. 부록 A 광고물의 설치수량, 기금납부, 납부계좌
2. 부록 B 특례규정의 적용
3. 부록 C 분기점에 대한 광고물 등 설치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4. 별첨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조명적용 기준
5. 별첨 2 제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 세부사항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253-42, 지방재정회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

사업자 주소

회사명 기재 (인)

부록 A <광고물의 설치수량, 기금납부, 납부계좌>

A-1. 광고물의 설치수량

가. 제1조에 의한 사업권역 및 광고물 수량은 다음과 같다.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시도	시군구	상세위치	광고물 형태	4차사업 권역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북동 13-42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북동 560-2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북동 545-1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북동 620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동 1736-1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동 1700-2,1700-3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동 1694-16, 68, 48	아날로그	1
1	1-1	인천공항	경기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408-1	아날로그	4
1	1-1	인천공항	경기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455-4	아날로그	4
1	1-1	자유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33,134	아날로그	3
1	1-1	제1순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287	아날로그	8
1	1-1	제1순환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42-2, 42-3	아날로그	8
1	1-1	제1순환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248-1	아날로그	8
1	1-1	제1순환	인천	계양구	용종동 31-1	아날로그	8
1	1-2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하야동 3-8	아날로그	1
1	1-2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하야동 18-5	아날로그	1
1	1-2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귤현동 382-2	아날로그	1
1	1-2	인천공항	인천	서구	신불IC로부터21.2km서울방향좌측	아날로그	1
1	1-2	인천공항	인천	서구	신불IC로부터 20.7km 서울방향 좌측	아날로그	1
1	1-2	인천공항	인천	서구	경서동 178-8	디지털	1
1	1-2	제2경인	경기	시흥시	신천동 673-3	아날로그	3
1	1-2	제2경인	경기	시흥시	안현동 197	아날로그	3
1	1-2	제2경인	인천	남동구	운연동 461-5	아날로그	3
2	2-1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하야동 3-3	아날로그	1
2	2-1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하야동 18-1	아날로그	1
2	2-1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평동 51-2	아날로그	1
2	2-1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상야동 403-3	아날로그	1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시도	시군구	상세위치	광고물 형태	4차사업 권역
2	2-1	인천공항	인천	계양구	귤현동 52-4	아날로그	1
2	2-1	인천공항	인천	서구	검암동 58-9	아날로그	1
2	2-1	인천공항	인천	서구	검암동 437-1	아날로그	1
2	2-1	서해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6-41	아날로그	2
2	2-1	경부	경기	오산시	원동 144-7	아날로그	6
2	2-1	경부	경기	오산시	원동 108-1	아날로그	6
2	2-1	영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10	아날로그	1
2	2-1	영동	경기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434, 1045	아날로그	1
2	2-1	영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9-8,999,1002-2	아날로그	1
2	2-2	올림픽	서울	강서구	개화동 380-7	아날로그	2
2	2-2	올림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8-5	아날로그	2
2	2-2	올림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15	아날로그	2
2	2-2	올림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8	아날로그	2
2	2-2	올림픽	서울	강남구	삼성동 81-1	아날로그	2
2	2-2	강변북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316-1,2	아날로그	3
2	2-2	경부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193-2	아날로그	1
2	2-2	경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5	아날로그	1
2	2-2	남해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4-2	아날로그	2
2	2-2	남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957-13	아날로그	2
2	2-2	남해	부산	강서구	대저1동 483-1	아날로그	2
2	2-2	남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961-4, 5	아날로그	2
2	2-2	남해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356-4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63-10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디지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0, 3-9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7-5	아날로그	2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아날로그	2
3	3-1	호남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5	아날로그	2
3	3-1	호남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72-2	아날로그	2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시도	시군구	상세위치	광고물 형태	4차사업 권역
3	3-1	중앙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315-2	아날로그	4
3	3-1	남해	경남	창원시	동읍 덕산리 838-2	아날로그	2
3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2-1	아날로그	2
3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0-1(1)	아날로그	2
3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0-1(2)	디지털	2
3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동작동 316-1	아날로그	2
3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동작동 316-2	아날로그	2
3	3-2	경부	대구	동구	부동 620-3	아날로그	1
3	3-2	경부	대구	동구	부동 441-1	아날로그	1
3	3-2	경부	경북	구미시	도량동 455-3	아날로그	6
3	3-2	경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179-3	아날로그	8
3	3-2	경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403-2	아날로그	8
3	3-2	경부	경북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315-1, 315-6	아날로그	1
3	3-2	경부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433-1	아날로그	1
4	4-1	제1순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59, 260-1	아날로그	3
4	4-1	제1순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60	아날로그	3
4	4-1	제1순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659	아날로그	3
4	4-1	경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29-3	아날로그	3
4	4-1	경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40	아날로그	3
4	4-1	경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1-2	아날로그	3
4	4-1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34-2	아날로그	6
4	4-1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14-4, 1019-243	아날로그	6
4	4-1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84-3	아날로그	6
4	4-1	서해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81-3	아날로그	2
4	4-1	서해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74-3	아날로그	2
4	4-1	서해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283	아날로그	2
4	4-2	경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56-1	아날로그	3
4	4-2	경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02-3	아날로그	3
4	4-2	경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97-5, 98-1	아날로그	3
4	4-2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169	아날로그	6
4	4-2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117	아날로그	6

대권역	소권역	도 로	시도	시군구	상세위치	광고물형태	4차사업권역
4	4-2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321	아날로그	6
4	4-2	서해안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797	아날로그	2
4	4-2	서해안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281	아날로그	2
4	4-2	서해안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6	아날로그	2
4	4-2	서해안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14	아날로그	2
4	4-2	서해안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21	아날로그	2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289-2	아날로그	4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488-1	아날로그	4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126-2	아날로그	4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342-2	아날로그	4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528-2	아날로그	4
5	5-1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53-1	아날로그	6
5	5-1	경부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62-1,148-6	아날로그	6
5	5-1	경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80	아날로그	6
5	5-1	경부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136-4	아날로그	7
5	5-1	경부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168-2	아날로그	7
5	5-1	경부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43	아날로그	7
5	5-1	경부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360-1	아날로그	7
5	5-1	경부	경기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76-4	아날로그	7
5	5-2	경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8	아날로그	4
5	5-2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8-2	아날로그	4
5	5-2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114-4	아날로그	4
5	5-2	경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491-2	아날로그	4
5	5-2	경부	서울	서초구	신원동 67-1	아날로그	4
5	5-2	경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68-9	아날로그	7
5	5-2	경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182-7, 182-8	아날로그	7
5	5-2	경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93	아날로그	7
5	5-2	경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 157-1	아날로그	3
5	5-2	경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57	아날로그	3
5	5-2	경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224-5	아날로그	3
5	5-2	경부	대전	대덕구	와동 217-7	아날로그	6

대권역	소권역	도 로	시도	시군구	상세위치	광고물형태	4차사업권역
5	5-2	호남	대전	대덕구	신대동 121	아날로그	2
5	5-2	호남	대전	유성구	관평동 523-10	아날로그	2
5	5-2	호남	대전	유성구	노은동 157-6	아날로그	2
6	6-1	중부	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92-2	아날로그	8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22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245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90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00-37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627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66-6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271-2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가남면 정단리 520-5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325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225-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647-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경기	여주시	상거동 310-4	아날로그	1
6	6-1	영동	강원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39	아날로그	1
6	6-1	영동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284	아날로그	1
6	6-1	영동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5-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강원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516-1	아날로그	1
6	6-1	영동	강원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997	아날로그	1
6	6-2	제1순환	경기	구리시	토평동 68	아날로그	8
6	6-2	제1순환	경기	하남시	초일동 172-3	아날로그	8
6	6-2	중부	경기	하남시	천현동 279-4	아날로그	8
6	6-2	중부	경기	하남시	천현동 434-10	아날로그	8
6	6-2	중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579-3	아날로그	8
6	6-2	서울양양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80	아날로그	8
6	6-2	서울양양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07-10	아날로그	8
6	6-2	서울양양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08	아날로그	8
6	6-2	서울양양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16	아날로그	8
6	6-2	중부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2-11	아날로그	8
6	6-2	중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337	아날로그	8

나. 제14조에 의한 광고시설물 이전 및 추가설치 구간 및 경계는 다음과 같다.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광고물 현황		도로별 사업구간 (광고물 추가·이전 설치 가능지역)
			광고물 위치	수량	
1	1-1	인천공항	인천 중구	7	인천 중구
			경기 김포시	2	경기 김포시
		자유로	경기 고양시	1	경기 고양시 ~ 파주시
		제1순환	경기 고양시	1	인천 남동구 ~ 서울 노원구
			인천 계양구	3	
		1-1권역 소계		**14**	
	1-2	인천공항	인천 서구·계양구 (서울방향 좌측, 디지털1기)	6	인천 서구 서울방향 좌측 ~ 계양구 서울방향 좌측
		제2경인	경기 시흥시	2	능해IC ~ 삼막IC
			인천 남동구	1	
		1-2권역 소계		**9**	
	1권역 합계			**23**	
2	2-1	인천공항	인천 서구·계양구 (서울방향 우측)	7	인천 서구 서울방향 우측('검암동 437-1 광고물'과 '공제회 특별사업 광고물*'의 중간지점) ~ 계양구 서울방향 우측 *신불IC로부터 서울방향 19.1km 인근 수도권 매립공사 공유수면 매립부지
		서해안	경기 안양시	1	서울 금천구 ~ 경기 시흥시
		경부	경기 오산시	2	경기 오산시
		영동	경기 용인시	3	인천 남동구 ~ 경기 용인시
		2-1권역 소계		**13**	
	2-2	올림픽	서울 강서구	2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1	서울 서초구 ~ 서울 강동구
			서울 강남구	2	
		강변북로	서울 마포구	1	기점 ~ 종점
		동부간선	-	-	기점 ~ 종점
		경부	경남 양산시	2	경남 양산시 ~ 부산 금정구
		남해	부산 강서구	5	경남 김해시 ~ 부산 북구
		2-2권역 소계		**13**	
	2권역 합계			**26**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광고물 현황		도로별 사업구간 (광고물 추가·이전 설치 가능지역)
			광고물 위치	수량	
3	3-1	올림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 1기)	7	서울 영등포구
		호남	전남 장성군	2	논산JC ~ 전남 순천시
		중앙	경남 김해시	1	동대구JC ~ 삼락IC
		남해	경남 창원시	1	전남 영암시 ~ 경남 창원시
		3-1권역 소계		**11**	
	3-2	올림픽	서울 동작구 (디지털 1기)	5	서울 동작구
		경부	대구 동구	2	경북 김천시 ~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1	
			경북 구미시	1	
			경북 칠곡군	2	
			경북 영천시	1	
		3-2권역 소계		**12**	
	3권역 합계			**23**	
4	4-1	제1순환	경기 성남시 중원구	2	서울 송파구 ~ 경기 시흥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1	
		경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용인시	3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일부('보정동 684-3 광고물'과 '보정동 1019-169 광고물'의 중간지점)
		서해안	경기 안산시	3	경기 안산시, 군포시
		4-1권역 소계		**12**	
	4-2	경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용인시	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부('보정동 684-3 광고물'과'보정동 1019-169 광고물'의 중간지점) ~ 수원신갈IC
		서해안	경기 화성시	5	경기 화성시 ~ 전남 무안군
		4-2권역 소계		**11**	
	4권역 합계			**23**	

대 권역	소 권역	도 로	광고물 현황		도로별 사업구간 (광고물 추가·이전 설치 가능지역)
			광고물 위치	수량	
5	5-1	경부	서울 서초구 (서울방향 좌측)	5	서울 서초구 서울방향 좌측
			경기 용인시	3	수원신갈IC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남단, 경기 평택시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 안성시	5	경기 안성시 (경계: 미양면 신계리 219-78, 개정리 641-3)
		5-1권역 소계		**13**	
	5-2	경부	서울 서초구 (서울방향 우측)	5	서울 서초구 서울방향 우측
			충남 천안시	3	충남 천안시(경계: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404-3, 연곡리 404-5) ~ 충남 영동군
			충북 청주시	3	
			대전 대덕구	1	
		호남	대전 대덕구	1	대전 대덕구 ~ 논산JC
			대전 유성구	2	
		5-2권역 소계		**15**	
	5권역 합계			**28**	
6	6-1	중부	경기 이천시	1	경기 이천시
		영동	경기 이천시	6	경기 이천시 ~ 강원 강릉시
			경기 여주시	6	
			강원 원주시	5	
		광주원주	-	-	기점 ~ 종점
		6-1권역 소계		**18**	
	6-2	제1순환	경기 구리시	1	경기 하남시 ~ 남양주시
			경기 하남시	1	
		서울양양	경기 남양주시	4	기점 ~ 종점
		중부	경기 하남시	3	경기 하남시 ~ 광주시
			경기 광주시	2	
		6-2권역 소계		**11**	
	6권역 합계			**29**	
전권역 총계				**152**	

A-2. 기금납부

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의 기금으로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금원을 아래와 같이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수수료 및 제작, 관리 등에 따른 제반비용과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입율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계약금	10.0%	계약체결일		납입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납부
1차 중도금	8.2%	2022.03.20		
2차 중도금	8.2%	2022.06.20		
3차 중도금	8.2%	2022.09.20		
4차 중도금	8.2%	2022.12.20		
5차 중도금	8.2%	2023.03.20		
6차 중도금	8.2%	2023.06.20		
7차 중도금	8.2%	2023.09.20		
8차 중도금	8.2%	2023.12.20		
9차 중도금	8.2%	2024.03.20		
10차 중도금	8.2%	2024.06.20		
잔금	8.0%	2024.09.20		
계	**100%**	-		

※ 매회 납입 시 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A-3. 기금을 납부할 계좌는 아래와 같다.

○ 신한은행 140-008-211251(예금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록 B <특례규정의 적용>

B-1. 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특례규정이 인정되는 지역

○ 설치특례는 기존의 승인 특례는 승계·유지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설치 특례를 적용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제회에 특례적용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함

※ 상기 설치특례의 적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도로법령” 등에 의한 “접도구역”을 침범 할 수 없음

※ 향후 설치위치 이전 등 여건에 따라 상기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B-2. 구체적인 설치특례기준은 광고물 설치 시 입지별 경관과의 조화,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함

B-3. 당해 지주이용간판을 제작·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하고 정확한 설치·운영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설치승인 신청시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계산 등의 검토를 받은 구조계산서 및 검토의견서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현황측량을 받은 결과서

B-4. 특례적용 이후 보완사항

○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광고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간에 한하여 적용

○ 1급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적용

※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 시공, 감리는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시행

○ 만일의 사고 발생시 사업자(법인) 및 사주(개인)는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부록 C <분기점에 대한 광고물 등 설치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C-1. 분기점(JC) 등에 대한 광고물 등 설치

○ 광고물 등의 설치는 권역별 각 도로 및 고속국도의 진행방향으로 광고면이 형성되게 설치함

○ 광고물 등 설치와 관련, 권역별 각 도로 및 고속국도 또는 사업자간 설치 장소 및 위치의 중복·경합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4호의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작성·첨부하여 공제회에 설치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거 조정함(단, 신청 관련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C-2.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고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광고물을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광고시설물 및 디자인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함

○ 입지별 경관과의 조화,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C-3. 조명방식의 적용기준

○ 광고물 조명의 표현은 내부조명* 방식을 원칙으로 함(별첨 참조)

* 광 투과형 소재를 이용해 표면의 광고내용을 내부의 광원으로 투과시켜 표출하는 조명방식

[별첨1자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조명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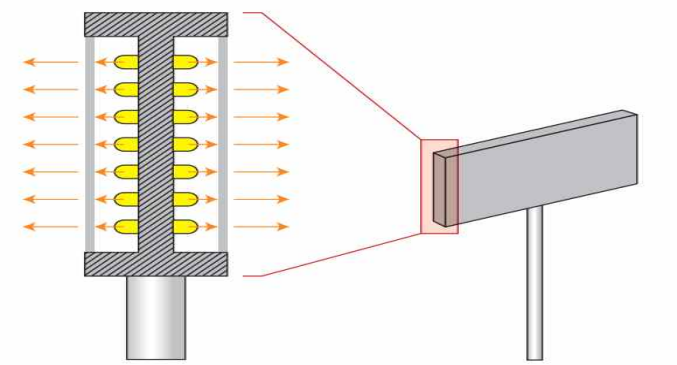
1.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3]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되어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1초 이내인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2. 조명방식

○ 광고물 조명의 표현은 내부조명(광 투과형 소재를 이용해 표면의 광고내용을 내부의 광연으로 투과시켜 표출하는 조명방식)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내부에 사용하는 조명은 LED를 사용하며,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KC인증 필수)



내부조명방식

○ 휘도기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조명시간

- 일몰 시간부터 밤 12시 범위 내

※ 단,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의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 표출시간 조정 (예, 10시 이후 소등)

3. 특기사항

○ 민원 등의 사유 발생이 있을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디자인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해야 함

[별첨2자료] 제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 세부사항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시, 특히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행정지원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시설물 등의 설치

<추가설치>

○ 첫째, 사업자가 광고시설물을 추가로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장소,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공제회와 협의하여 함

※ 일반 광고시설물의 계약수량 추가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시는 계약변경 필요

○ 둘째, 광고시설물의 설치계획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제회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변경 전 사업자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필요

※ 디지털 광고시설물에 한하여 설치비는 전문기관의 용역 및 자문을 통하여 확정함

⇒ 광고송출 등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되, 공제회가 비용처리·지출한 운영장비와 프로그램 등 일체는 사업기간 종료 후 공제회로 반납해야 함

※ 영구시설물(기초, 기둥, 상부골조, 1차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밀점검은 공제회가, 그 외 소모품 교체 및 전력사용 등 일반관리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수행해야 함

<이전설치>

○ 5차 사업 추진기간 중 국가사업 및 기타사유로 광고물의 이전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를 공제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 하되, 원인행위자에게 철거, 이전 설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국가기관 등의 공공 사업으로 인한 이전설치 시 원인행위자가 이전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회가 부담할 수 있음

□ 옥외광고 디자인 게첨

○ 사업자는 5차 사업기간 중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광고시안의 게첨을 위해서는 공제회로 디자인심의를 신청해야 함.

○ 디자인시안 및 기타 관련내용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제회 담당 직원에게 등록여부를 구두 전달하면 심의위원이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주 1회 개최)

※ 사업자는 공제회에서 발급한 로그인 계정을 이용, 등록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심의위원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심의자료 검토 및 평가한 결과를 보고 완료 후, 사업자에게 심의결과 통보하면 게첨이 가능함

○ 광고의 게첨은 반드시 심의·승인 받은 디자인시안만 게첨해야 하고, 모든 광고물에 대해 현장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작업 일정통보서' 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일부 문자 및 색채의 변경 또한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함

○ 디자인 심의 관련하여 계약서 24조에 따른 게첨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 디자인 심의를 반려할 수 있음.

□ 토지 임대차 계약 및 토지사용승낙서 체결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 사업자, 공제회의 3자간 합의방식으로 체결하고, 토지임대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

※ 토지사용승낙서 샘플은 공제회가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기간으로 함.

○ 만약, 해당 기간까지 토지사용권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제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원활한 5차 사업수행과, 향후 6차 사업 준비 시 기존 사업자의 업무방해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 계약의 사용기간을 5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약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토지주 연락처와 계약사항을 확보해야 하나,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제회의 협조를 받아 당해 사업자가 직접 토지주 접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 사업자는 광고시설물 설치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토지 사용권 계약 시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5차 사업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로 정하여야 함.
- 토지사용권 계약기간이 5차 사업기간 도중에 종료된 경우 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하여야 함.

○ 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토지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사용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함.

-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계약상 토지 사용권자를 사업자에서 공제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차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등 토지사용 대가 및 계약 변경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2024년 1월 10일까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의 토지 사용 계약 관련 정보(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포함)에 관한 일체를 공제회에 제공하여야 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제출

○ 계약서 제9조와 같이 기금 및 지체상금 납부와 관련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내에는 매회차 중도금 납부 후 기금잔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관리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자는 연 4회 매분기마다 정기점검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기별 관리보고 시 광고 게·폐첨 결과 및 매체 현황표 포함 제출

○ 2회차(2/4분기)는 풍수해대비 점검보고서로 대체함.

- 기타 특별한 사유(태풍, 장마 등 기상이변) 등으로 공제회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디자인 심의 신청 시 광고(안)에 대한 게첨기간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함.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공제회”라 함)에서 집행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제회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시행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공제회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면 공제회는 계약 및 사업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제회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제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공제회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1]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참가자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공제회" 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제작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제회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공제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공제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공제회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대표 (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제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있어

○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공개하고,

○ 구매, 원가, 입찰, 계약, 공사, 대가심사/지급, 규격지원 등 계약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년 월

○ 계약담당부서명 :	○ 사업담당부서명 :
- 부 서 장 : (인)	- 부 서 장 : (인)
- 담 당 자 : (인)	- 담 당 자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년~2년간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①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시행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ㅇ ㅇ ㅇ (인)

ㅇ ㅇ ㅇ (인)